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7
----------	-----

2019년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31일 오중석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오중석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유모차의 교부 및 대여 등과 관련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북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
(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안취지

-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28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¹⁾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음.

2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본 개정안은 장애아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장애아동(18세 미만)의 유모차 교부·대여, 수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상에 유모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임.
- 현재 서울시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29개 보조기기 국비지원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유모차의 경우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보조기기센터에 의한 대여 및 수리지원만을 하고 있어,
-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1) 육창 예방용 방식 및 커버 외 27개 품목

- 집행부 또한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장애 아동(18세미만)의 유모차 교부·대여, 수리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였음.

가. 개정안의 내용

-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 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 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추진 현황

-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과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대여 사업으로 구분됨.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8개 품목²⁾에 대하여 장애종류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에 직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함.

※ '18년 지원실적 : 807명, 245,933천원

2) 육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7개 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대여 사업은 권역별(4개소) 장애인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구비하고 있는 보조기기의 임대, 제작 및 수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18년 대여실적 : 보유 1,428대, 대여실적 : 5,813건

- 현재 개정 조례안의 유모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5조³⁾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에는 해당되지만, 교부사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다만, 집행부는 보조기기센터를 통하여 대여 및 수리 지원을 하고 있음.

※ 유모차 보유 및 대여 현황('19.1월기준) : 보유 57대 , 대여 32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12 개인 이동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PERSONAL MOBILITY)

12 27 07 유모차 및 성인용 운반차 (Prms and buggies)

높거나 앉은 자세로 1인 이상 탑승하는 보조기구로 추진 및 조종은 보조인이 보조를 해주어야 함. 성인을 이동을 위한 4륜차 등이 포함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유모차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⁴⁾ 및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⁵⁾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써

3)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대여, 수리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음.

〈 장애인복지정책과 의견 〉

가. 총괄의견 : 조례개정 필요

-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대여, 수리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

나. 조항별 검토의견

개정안(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 (이유, 논거, 의견 포함)
<p>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별표1 - 12 27 07 유모차 및 성인용 운반차)</p>	<p>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16-15호) 관련 유모차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에 해당되어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례에 명시</p>

3 종합 의견

-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지원 및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정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 품목 중 장애아 유모차가 예산상 한계로 지원 품목에서 제외됨(2020.1.1.일부터)⁶⁾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모차(수동휠체어)지원〉

가.사업개요

- 지원기간 : 1999.1.1.~2019.12.31.
- 지원내용 :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2018.12.31.자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2020.1.1.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 제외사유 : 보건복지부 예산상 한계로 지원 품목에서 제외

- 다만, 향후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유모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개정(2018.12.31.)에 따라 2020.1.1.부터 보장구 지원품목에서 제외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오중석 의원(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상훈, 한기영, 신정호,
경만선, 문장길, 노승재, 김태호,
이경선, 강동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유모차의 교부 및 대여 등과 관련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안 제 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9조(비용 감면 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 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 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비용감면 등)제2항 신설에 따라 장애아동 유모차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678,87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78,870천원으로 연평균 135,77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대상이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 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18세 미만 지체(488)·뇌병변(1,694) 장애아동은 총 2,182명

-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1, 2급 장애인의 비율이 14.3%이므로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중 14.3%인 312명이 유모차 교부를 필요로 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 14.3%(전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1-2급 비율) = 312명

-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사양을 갖춘 장애아동 유모차 중 조달청 나라장터실제 구입 사례 단가 준용하여 비용산출

- ※ 산출된 지원단가 : 2,010천원/대

- 유모차 대여비용 단가는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실제 연간 대여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중 3급으로 추정되는 288명의 10%인 29명을 대여수요로 가정

-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 13.2%(전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3급 비율) = 288명

- 유모차 수리비용 단가는 바퀴교체를 기준으로 시중단가인 10만원을

- 산정하였으며, 교부대수의 절반을 수리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678,870천원(연평균 135,774천원)
 - 유모차 교부비용 + 유모차 대여비용 + 유모차 수리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9조 제2항	유모차 교부	627,120	-	-	-	-	627,120
		유모차 대여	7,250	7,250	7,250	7,250	7,250	36,250
		유모차 수리	3,100	3,100	3,100	3,100	3,100	15,500
	소계(b)	637,470	10,350	10,350	10,350	10,350	678,870	
	□총 비용(b-a)	637,470	10,350	10,350	10,350	10,350	678,870	

- 유모차 교부 비용 ≙ 627,120천원
 - 산출방식 : 18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중 1-2등급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되는 312명을 유모차 교부대상으로 가정
 하였고 1차년도 일괄교부 전제
 - 2020년 구입비 = 312대 × 21,000천원 = 627,120천원

- 유모차 대여비용 ≙ 36,2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장애아동유모차대여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장애아동 유모차 대여 비용 : 7,250천원
 · 연간 장애아동 유모차 대여비용 : 250,000원 × 29명 = 7,250천원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 13.2%(전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3급 비율) × 10% = 29명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 대여중인 유사 사양제품의 1년 임대료를 기준

으로 단가를 산출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국형)의 ‘장애아동 보조 기기 렌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평균 본인부담금도 연250,000원 수준임을 참고하여 산출)

○ 유모차 수리비용 ≒ 15,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장애아동유모차수리비용)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유모차 수리비용 : 31,000천원

· 연간 유모차수리비용 : 100,000원 × 31대 = 31,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